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참 고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5.7.28.(월) 조간	배포	2025.7.25.(금)			
담당부서	중소금융검사3국 검사기획조정팀 검사1팀	책임자	국	장	이재석	(02-3145-8810)
		담당자	팀	장	박병일	(02-3145-8805)
			팀	장	서강훈	(02-3145-8816)
신용카드 해외 사용시 유의사항 안내 - 출입국 단계별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 -						

주 요 내 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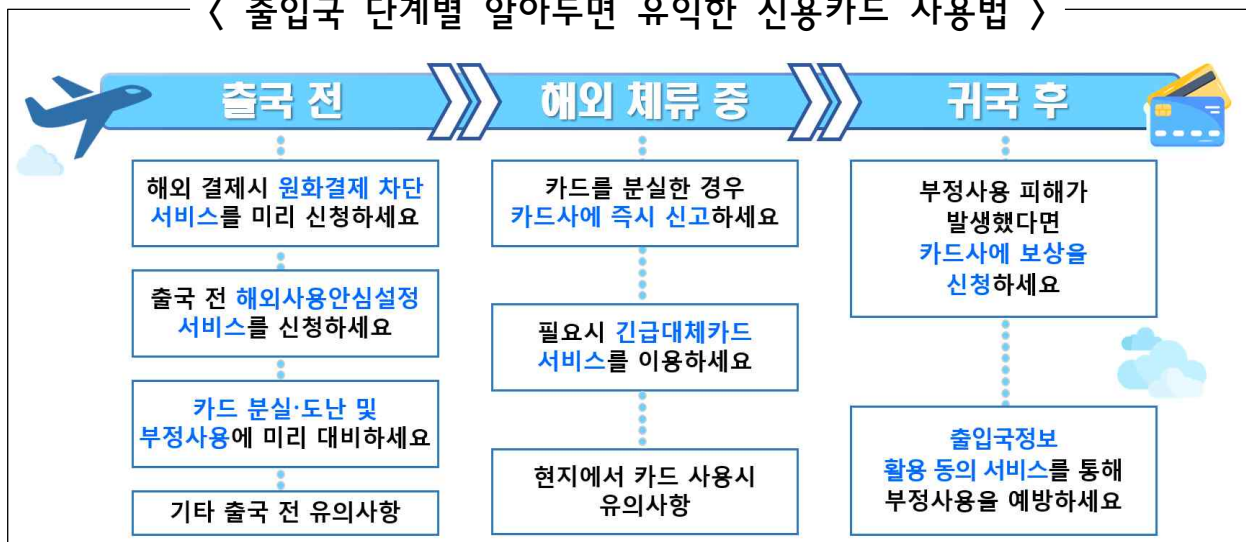
- 최근 해외여행 및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자수가 크게 늘면서 카드 해외사용액도 증가*하고 있습니다.

* 내국인 출국자수, 신용·체크카드 해외사용액(만명, 조원) : ('22년) 655, 12.2 → ('24년) 2,869, 20.0

- 한편, 해외 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카드 도난·분실,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,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-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.

〈 출입국 단계별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 〉



I. 해외 카드 부정사용 현황

-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'24년중 소폭 감소하였으나 '21년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*

* 금액(억원) : ('21년) 5.3 → ('22년) 15.2 → ('23년) 33.6 → ('24년) 31.6
건수(건) : ('21년) 522 → ('22년) 1,179 → ('23년) 2,324 → ('24년) 2,397

- '24년 해외 부정사용 유형 중 도난·분실 27.9억원(2,113건), 카드 위변조가 3.6억원(283건)으로 대부분을 차지

- 특히 해외의 경우 사고 발생시 국내에 비해 대처가 용이치 않아 건당 부정사용액*이 크고, 건수도 증가 추세

* '24년 건당 부정사용액 : 해외(1,318천원), 국내(227천원) [해외가 국내의 5.8배]

- 여름 휴가철,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하여 해외 여행자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 증가 우려

II. 출국 전 유의사항

1 해외 결제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세요

-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해외원화결제*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
* DCC(Dynamic Currency Conversion) 서비스란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원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

-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(결제금액의 약 3~8%)가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- 따라서 해외에서 물품 구매시 **현지통화로 결제**하거나 **출국 전 카드사**(신용카드업 겸영은행 포함, 이하 동일)를 통해 **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**를 **신청***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* 원화 결제시 승인이 거절되고 달러 또는 현지통화로 결제되므로 추가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음

[참고]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방법

- ☑ **(신청방법)** 카드사의 **홈페이지, 콜센터, 모바일 앱** 중 편리한 방법으로 **사전 차단 신청***
 - * (예) 본인이 A카드와 B카드를 소지한 경우 A카드사와 B카드사에 각각 신청
-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**원화(KRW) 금액**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므로 **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**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
- 특히 **한국에서 해외 숙박 예약·여행사·항공사 홈페이지** 또는 **전자상거래 사이트** 등에 접속하여 대금 결제시 **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 여부** 등을 **확인**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음
- ☑ **(해제방법)**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해외원화결제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**언제 어디서라도 차단**을 **해제**하고 **원화로 결제** 가능

2 출국 전 **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**를 신청하세요

- **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***를 통해 카드 사용국가, 1회 사용금액,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할 수 있으므로,

* 고객이 직접 설정한 사용국가, 사용카드, 1회 사용금액, 사용가능기간 등 범위 내에서만 카드결제가 되도록 하는 서비스

- 여행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**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**를 **필요경비** 범위로 **조정**하여 **해외 부정거래**를 차단하거나 **피해**를 **최소화**할 수 있습니다.

※ 카드이용 조건 설정이 가능한 범위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이용하는 카드사에 **사전 확인** 필요

3 카드 분실·도난 및 부정사용에 미리 대비하세요

- 출국 전 카드사 앱*을 다운로드받고, 카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시면 카드 분실·도난시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.

* 로밍서비스 신청과 상관없이 와이파이(wifi) 및 데이터로 연결 가능하여 해외에서도 사용이 보다 용이 (다만, 일부 카드사는 유선 분실신고만 가능)

☞ '(붙임) 각 카드사 및 은행 분실신고 연락처' 참조

- 특히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연락하면 일괄하여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*합니다.

* **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**에서도 가능(「내 카드 한눈에-카드 분실 일괄신고」)

※ (참고) 신용카드 이외 국내 카드사 및 은행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 가족카드·체크카드도 동시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으나, 분실신고된 카드는 공과금 등에 대한 자동이체 사용이 불가

- 다만,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**일괄 해제가 되지 않으므로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에 연락**하셔야 합니다.

- 또한,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'**카드 결제 알림서비스***'를 신청하는 경우

* 카드 사용시마다 실시간으로 카드 사용금액, 시간, 가맹점명 등을 문자메세지(SMS), 알림톡, 앱 푸시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

- 국내·외 카드결제 내역이 휴대폰으로 안내되어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인지하여 대처 가능합니다.

※ (참고) 문자서비스는 해외 여행지에서 유심칩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출국 전 데이터 로밍 차단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, 알림톡 및 앱 푸시는 인터넷 사용이 안 될 경우 이용이 곤란

4 기타 출국 전 유의사항

- ①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
 - 출국 전 여권상 영문이름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,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*하시기 바랍니다.
- * 카드 뒷면 미서명 등 카드 회원의 작은 부주의로 인해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음
- ②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기도 하며, 이 경우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사용중인 비밀번호(4자리)와 다를 수 있으므로,
 - 출국 전 카드사에 문의하여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 - ③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대여한 카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,
 - 절대 카드를 대여하지 말고, 필요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.

Ⅲ. 해외 체류 중 유의사항

1 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세요

- ☐ 해외 체류 중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* 신고하여 사용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* 약관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분실·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
- 또한,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실물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- 카드 분실·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*이 있습니다.

*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16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업자는 분실·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짐

- 다만, 고의·중과실로 인한 비밀번호 누설, 양도·담보목적 카드 제공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.

▶ **(참고)**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*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 '선불전자지급수단'으로,

* 카드에 다양한 통화를 충전하여 해외결제, ATM 출금 등으로 사용하는 글로벌 결제 카드

-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이 적용되지 않아 분실·도난 신고 이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*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어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음

* 신고 접수 전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는 고객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

- 트래블카드 분실·도난시에는 지체 없이 트래블카드 앱,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여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야 함

- 카드사 신고시에는 카드종류, 카드번호, 도난·분실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,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며,

-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(police report) 발급을 요청하여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 필요시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

-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·도난·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- Visa, JCB 등 일부 국제 브랜드사는 체류국가에서 긴급대체카드 발급이 가능하므로

-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한 후 해당 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1~3일 이내 긴급대체카드를 발급*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 다만, 카드사별 비용 청구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며, 긴급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함

3 현지에서 카드 사용시 유의사항

①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또는 사설 ATM기 등은 카드 도난 및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을 최대한 삼가하고,

- 해외 노점상·주점 등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카드를 위·변조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②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,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경우

-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*하시기 바랍니다.

* 직접결제(IC칩 사용)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거래의 경우 해외 카드사에서는 통상 카드회원이 관리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상하지 않고 있음

- 또한,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카드정보(카드번호, 유효기간, CVC번호, 비밀번호 등)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.

③ 카드 결제(취소)시에는 결제(취소) 예정금액을 확인한 후 서명하고,

- 매출전표, 취소전표 등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향후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IV. 귀국 후 유의사항

1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했다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세요

- 해외에서 카드 분실·도난,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보상 신청서(이의신청서)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카드사에 제출*하시기 바랍니다.

*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유선으로 미리 상담 필요

- 다만,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카드 약관에 따라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(3~6개월)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※ 통상 도난·분실 경위 불확실, 영수증 미보관,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, IC칩 승인거래, 강매 주장, 귀국 후 물품 반품 요구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됨

2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을 예방하세요

- 해외 체류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·변조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

- 귀국 후 카드사에 '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'를 신청하시면 해외에서의 카드정보 유출이나 분실·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※ (참고) 해당 서비스 신청과는 별도로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향후 해외사용을 차단하도록 직접 설정할 수도 있음 (해외사용 일시 정지)

[참고] 해외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주요내용

- ☑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*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제한하는 서비스

* 본인의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 정보만 제공·활용되며, 출국일자 또는 행선지 등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

- 각 카드사 고객센터, 앱 및 홈페이지 등에서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 (무료, 카드사별 신청 필요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참고

해외 카드 사용 관련 피해 사례 및 대응요령

#1 해외 원화통화 결제 관련

A씨는 해외 여행지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신용카드로 계산하면서 **원화 결제(100만원)**하였는데, 다음달 결제청구서를 보니 카드사로부터 **거래금액의 5%(5만원)**에 해당하는 **원화결제 수수료**가 포함된 **105만원**이 청구되었음

☞ **해외원화결제(DCC: Dynamic Currency Conversion)**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하거나, 현지에서 영수증을 확인하여 금액이 원화로 표시된 경우 이를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했다면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

#2 카드 복제로 인한 부정사용 관련

B씨는 해외 여행 중 길거리에 있는 **사설 ATM기**에서 범인이 미리 설치한 **카드 복제기**를 모른 채 **현금을 인출**하였고, 범인은 B씨의 **복제한 카드**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매장 의류 쇼핑 등으로 **부정사용**

☞ ①**해외사용안심설정**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국가, 1회 사용금액,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해 두었다면 **피해를 최소화**할 수 있음

②또한, **카드 결제 알림서비스**를 신청한 경우 **카드 승인내역**을 실시간으로 문자(SMS) 등으로 제공받으므로 부정사용 발생시 **신속하게 대처** 가능

#3 해외에서 발생한 도난·분실 피해 관련

C씨는 해외에서 현지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과 가방을 기내 선반 위에 보관하였는데, 이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핸드폰에 남겨진 **카드 결제내역** 및 카드사로부터의 **부재중 전화**를 통해 **카드 분실 사실**을 뒤늦게 인지하였음

☞ ①**도난·분실 발생사실**을 인지한 즉시 전화,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카드사에 신고할 필요 (필요시 **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** 신청)

②필요시 일부 국제 브랜드사에서 제공하는 **긴급대체카드 서비스**를 이용하면 신청 후 **1~3일** 이내 체류국가에서 **긴급대체카드 발급** 가능

붙임
각 카드사 및 은행 분실신고 연락처

회사명	콜센터 전화번호		홈페이지
	국 내	해 외	
KB국민카드	1588-1788	+82-2-6300-7300	card.kbcard.com
롯데카드	1588-8300	+82-2-1588-8300	www.lottecard.co.kr
비씨카드	1588-4000 1588-4515	+82-2-950-8510	www.bccard.com
삼성카드	1588-8700	+82-2-2000-8100	www.samsungcard.com
신한카드	1544-7200 1544-7000	+82-1544-7200 +82-2-3420-7000	www.shinhancard.com
우리카드	1588-5300 1588-9955	+82-2-2169-5001 +82-2-950-8510(비씨)	www.wooricard.com
하나카드	1800-1111	+82-1800-1111	www.hanacard.co.kr
현대카드	1577-6200	+82-2-3015-9200	www.hyundaicard.com
BNK경남은행	1588-8585 1600-8585	+82-55-290-8585	www.knbank.co.kr
광주은행	1588-3388 1577-3650	+82-62-239-5000	pib.kjbank.com
IBK기업은행	1588-4515 1566-2566	+82-2-950-8510 +82-31-888-8000	www.ibk.co.kr
NH농협은행	1644-4000	+82-2-6942-6478	card.nonghyup.com
BNK부산은행	1588-4000 1588-6200	+82-2-950-8510	www.busanbank.co.kr
Sh수협은행	1588-4515 1588-1515	+82-2-950-8510 +82-2-2013-0000	www.suhyup-bank.com
iM뱅크 (대구은행)	1588-4515 1588-5050	+82-2-950-8510 +82-53-742-5050	www.imbank.co.kr
전북은행	1588-4477	+82-1588-4477	www.jbbank.co.kr
제주은행	1588-0079	+82-64-759-2002	www.jejubank.co.kr
SC제일은행	1588-4515 1588-1599	+82-2-950-8510 +82-2-730-5442	www.standardchartered.co.kr
한국씨티은행	1566-1000	+82-2-2004-1004	www.citibank.co.kr
카카오뱅크	1588-3333	+82-2-6420-3333	www.kakaobank.com
케이뱅크	1522-1000 1522-1155	+82-2-3778-9111	www.kbanknow.com
토스뱅크	1661-7654	+82-2-6975-9000	www.tossbank.com

* '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'에 따라 다수의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고객의 선택으로 한 카드사에 분실신고시 다른 카드사의 카드까지 분실신고 가능

** 카드사 앱을 통한 분실신고도 가능하며, 대다수 카드사 및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는 분실 일괄신고 가능(「내 카드 한눈에-카드 분실 일괄신고」)